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정덕 서울시 용산구 안국로2가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7-7413 팩스/ 797-7412 조은안·하희범·나유림/ PSPD

수 신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작은권리찾기 담당 : 김철준 변호사, 장소영 간사 : 797-8200)
제 목 현 개발보상의 허점과 이에 따른 개인권리 구제
날 짜 1997. 4. 24. (총 4 쪽)

보 도 자 료

우물 안에 갇힌 주거권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가옥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예정

1. 1997. 3. 26. 발족한 참여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실행위원장 : 金七俊)는 3월 28일에 접수된 황정수씨의 사례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 황정수씨는 30여년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02번지에서 살아 왔다. 그런데 집 바로 오른쪽에서 뒤편으로 윤창건설이 축대를 쌓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바로 앞에는 지붕보다 더 높은 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이미 주택의 오른쪽도 지붕보다 더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집은 완전히 세모꼴의 우물 안에 갇히게 된 것이다. 황정수씨의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집이 되어 버린 것이다.

(별첨 1 사진자료 참조)

이에 황정수씨는 윤창건설과 고양시에 대하여 이진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윤창건설과 고양시는 공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3. 윤창건설의 아파트 공사와 도로공사로 인하여 황정수씨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윤창건설에 피해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건물 이전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황정수씨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4.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그 외 같은 주에 접수된 하준조씨와 조한수씨의 사례에 대한 구제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 두 사례는 공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현재의 허점이 드러나는 사례이다.

실근처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하준조씨와 조한수씨건의 경우를 보면,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주거생활과 낙농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앞으로 확장되거나 신설될 다른 도로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만을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토지수용법 제45조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도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보상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은 별첨2 자료 참조)

5. 이번 사업의 의의는 그 동안 개발과정에서 무시돼 온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다. 공익을 위한 명분이나 예산상의 부족은 이유로 개인의 피해구제가 소홀히 돼 온 관행에 대해 이제 시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나선 것이다.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익사업의 과정에서도 개인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개발이 다소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권리구제를 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성숙한 민주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변호사단의 법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특히 하춘조씨와 조한수씨의 사례의 경우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없이 도로공사에 착수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활동과 함께 토지수용법의 시행령의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개별 당사자 연락처

황정수(전화 0344-63-3289)

하춘조(전화 : 0345-86-2787)

조한수(전화 :0339-356-0504)

* 각 사례에 대한 사진이 준비돼 있음

▣별첨자료▣

1. 고양시 황정수 주택 사진
2. 하춘조, 조한수의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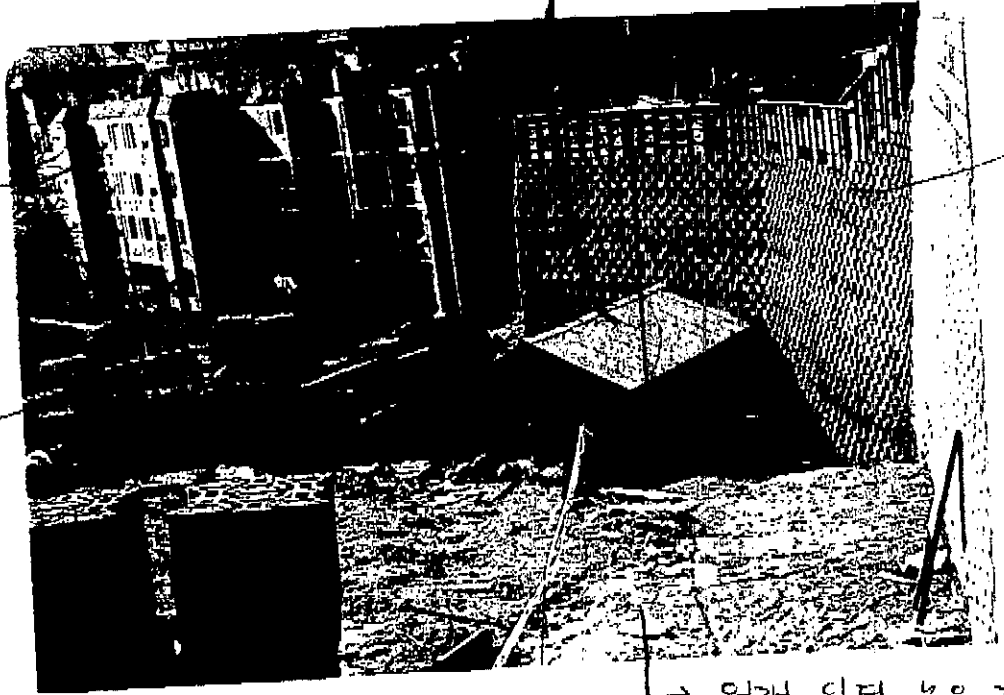
[별첨자료 1]

고양동 402번지. 탕광수씨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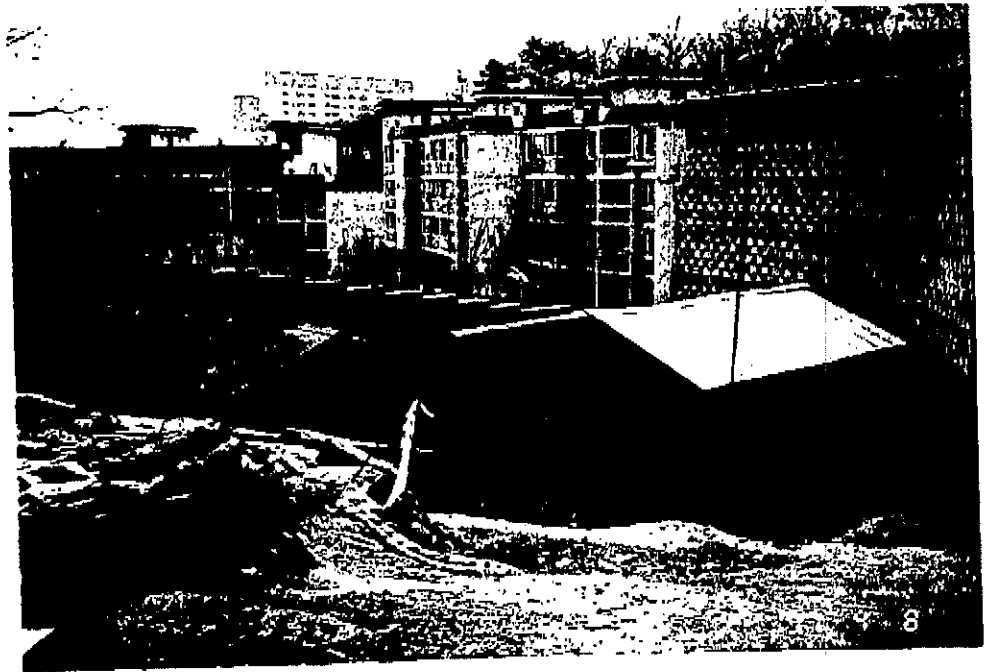
아파트

아파트
중대

아파트
진입로



→ 원래 있던 흙은 지대



별첨자료 2

* 사례 1- 하준조

하준조씨는 공직생활을 정리한 후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1987.경 안산시 부곡동 254에 평 820평의 그 위에 있는 농가주택을 샀다. 물론 당시에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 후 1993.경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하준조씨의 땅 240평이 수용되었다. 그러나 하준조씨는 이미 땅을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땅위에 농가주택을 허물고 전원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그 때 당시 건물은 위 고속도로로부터 약 12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 후 1996.년 다시 하준조씨의 집 앞 20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그 때문에 하준조씨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두개의 고속도로가 집보다 지대가 높은데다가 방음벽까지 설치되어 있어 마치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다시 신갈 안산간 고속도로의 확장 공사를 한다면서 하준조씨의 땅 70평을 추가로 수용하고 집으로부터 5미터도 채 안되는 지점에 고속도로변입해정지임을 나타내는 붉은 깃발을 꽂았다. 하준조씨는 이제 그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아도 아무도 사들여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하준조씨가 한국도로공사측에 이권 보상을 요구하고 주택에 대하여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자 공사측은 수용되는 70평에 대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 사례 2- 조한수

조한수씨는 경기 화성군 비봉면 양노2리 48에서 50년째 살면서 젓소 40마리를 기르고 있다.

지난 1996.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되면서 집에서 불과 3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었다. 그 때문에 조한수씨 가족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대형차량이 고속도로 교각의 이음새 부분을 통과할 때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여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시경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젓소가 민감한 동물이어서 소음 때문에 자주 놀라고 채유량마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인 39번 국도를 위 측사로부터 불과 12미터 떨어진 지점에 건설할 예정이다.

조한수씨 집과 측사의 양옆으로 고속도로와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소음과 진동 때문에 그곳에서 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고 젓소 기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조한수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가옥과 측사 이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가옥과 측사가 직접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